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 산 시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33
----------	-------

제출년월일 : 2026.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방과 후 초등학생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개소될 예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사무를 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사무명

-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

○ 필요성

-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중심의 아동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돌봄 안전망 확충
- 아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내 3층 일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내 3층 일부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설치
 - 시설규모 : 126.52㎡(정원 20명 예정)
 - 주요시설 : 사무실, 프로그램실, 탕비실, 창고 등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인력 : 3명(센터장, 돌봄교사, 돌봄인력)
 - 위탁사무 : 2026년 설치 예정인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업무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그 외 시장이 필요에 의해 위탁하는 아동돌봄 사업 등
- ※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 【붙임 1】 |
|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 【붙임 2】 |
| ☐ 예산수반사항 | : 【붙임 3】 |
| ☐ 방침결정문 | : 【붙임 4】 |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년·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노동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교육·외국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4. 재계약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필요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을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위탁사무명 :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검토항목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아동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이 필요한 사무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전문기관의 운영과 정기적인 지도 감독으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위탁 운영관리 철저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센터 운영 시 아동의 안전, 교육, 지도 등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 및 기술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이용아동 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성과 측정 용이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분기별 정산검사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아동복지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 법인 등으로 독과점 문제 또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없음
검토 종합 의견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 전문가를 통한 민간위탁 필요

【붙임 3】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1. 관련조문 및 비용 발생 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내시 산출 근거에 따라 편성
○ 2026년 신규 설치 위탁운영비 소요액 (1개소)

나. 비용추계결과

- 총 예산(신규설치 1개소)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 소요액	640,706	41,810	143,152	147,447	151,871	156,426
기자재비	20,000	20,000	0	0	0	0
인건비	426,571	15,938	98,152	101,097	104,130	107,254
운영비	70,435	2,660	16,200	16,686	17,187	17,702
돌봄인력지원	90,868	3,012	21,000	21,630	22,279	22,947
행복밥상지원	22,592	0	5,400	5,562	5,729	5,901
아동돌봄 프로그램지원	10,240	200	2,400	2,472	2,546	2,622

※ 기자재비는 2026년 신규 설치 시 1회 지급

※ 수탁자 선정절차,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 2026년 예산은 2개월분(11~12월)만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보조사업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복지국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계
세 입		41,810	143,152	147,447	151,871	156,426	640,706
국·도비 보조금		34,912	94,404	97,236	100,153	103,157	429,862
지방세 수입		6,898	48,748	50,211	51,718	53,269	210,844
세 출		41,810	143,152	147,447	151,871	156,426	640,706
기자재비		20,000	-	-	-	-	20,000
인건비		15,938	98,152	101,097	104,130	107,254	426,571
운영비		2,660	16,200	16,686	17,187	17,702	70,435
돌봄인력지원		3,012	21,000	21,630	22,279	22,947	90,868
행복밥상지원		-	5,400	5,562	5,729	5,901	22,592
아동돌봄 프로그램지원		200	2,400	2,472	2,546	2,622	10,240
재원 조달		41,810	143,152	147,447	151,871	156,426	640,706
의존 재원	소 계	34,912	94,404	97,236	100,153	103,157	429,862
	국·도비 보조금	34,912	94,404	97,236	100,153	103,157	429,862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898	48,748	50,211	51,718	53,269	210,844
	지방세수입	6,898	48,748	50,211	51,718	53,269	210,844
	세외수입	-	-	-	-	-	-